



#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 협회

##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신자 수신 참조

참 조

제 목 폐기물매립시설의 REC 가중치 「시설물 기준 적용」 요청 탄원서 알림 및 연명부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용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 상부에 태양광에너지 발전 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와 관련하여, 부지 기준(0.7~1.2)과 시설물 기준(1.0~1.5) 적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의 「RPS제도 폐기물 관련 REC 적정 가중치 적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및 토론회 개최('15.10.30) 결과,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리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로서 시설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시설물 적용 유사대상들이 많음에 따라 이에 대한 변별력 주장이 필요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명분을 보완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 '폐기물매립시설의 REC 가중치 「시설물 기준 적용」 요청 탄원서'와 함께 각 계 '연명부'를 제출할 예정이오니, 귀 사의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임의 연명부를 작성하시어 '15.12.04(금)까지 협회[우편 및 fax (02-718-71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1. 폐기물매립시설의 REC 가중치 「시설물 기준 적용」 요청 탄원서 1부.  
2. 연명부 양식 1부. 끝.

##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 협회 장

수신 : ㈜코엔텍, ㈜이에스티, ㈜삼중, 케이씨환경개발㈜, ㈜진흥중공업, 아세아테크㈜, ㈜에너지드림, ㈜이에스정원, ㈜보림씨에스, ㈜세창이엔텍, 코리아썬환경산업㈜, ㈜국인산업, (유)진동산업, (유)태평양, ㈜케이엠그린, ㈜여수환경산업, ㈜와이엔텍, 동양에코㈜, 그린바이로㈜, 동양에코㈜, ㈜경주산업개발, ㈜와이에스텍, 케이엠그린구미지점, (주)티에스케이이엔이, ㈜미래산업개발, ㈜지엠이앤씨, 에코시스템(주), ㈜에스씨이노베이션, 수성산업㈜ 32개사

담당	김정훈	팀장	김진오	사무국장	장기석	상근부회장	진원기	회장	이민석
협조									
시행	한매협 2015 - 58호		(2015. 11. 24)		접수				
우	157-7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11층(등촌동, 우리벤처타운)			/		www.kiwrma.or.kr		
전화	02-718-7900	전 송		02-718-7171	/		kiwrma@kiwrma.or.kr		비공개

---

# 폐기물매립시설의 REC 가중치 「시설물 기준 적용」 요청 탄원서

---

2015. 11.

전국 폐기물매립 및 태양광발전업계 일동

**존경하는 윤상직 장관님!**[윤성규 장관(환경부), 변종립 이사장(한국에너지공단), 박주현 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 박경엽 원장(한국전기연구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창조경제를 목표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폐기물매립처분업체들은 매립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매립시설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시설물 상부에 토사로 최종복토를 함에 따라, 단순히 매립시설 외관이 부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시설물 기준(1.0~1.5)이 아닌 일반부지 기준(0.7~1.2)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전국 폐기물매립처분업체들은 간절한 바램과 열망을 담아 매립시설의 태양광에너지 REC 가중치를 시설물 기준으로 적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

## **1. 폐기물매립시설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로서 태양광 에너지 가중치 기준 중 ‘시설물’에 부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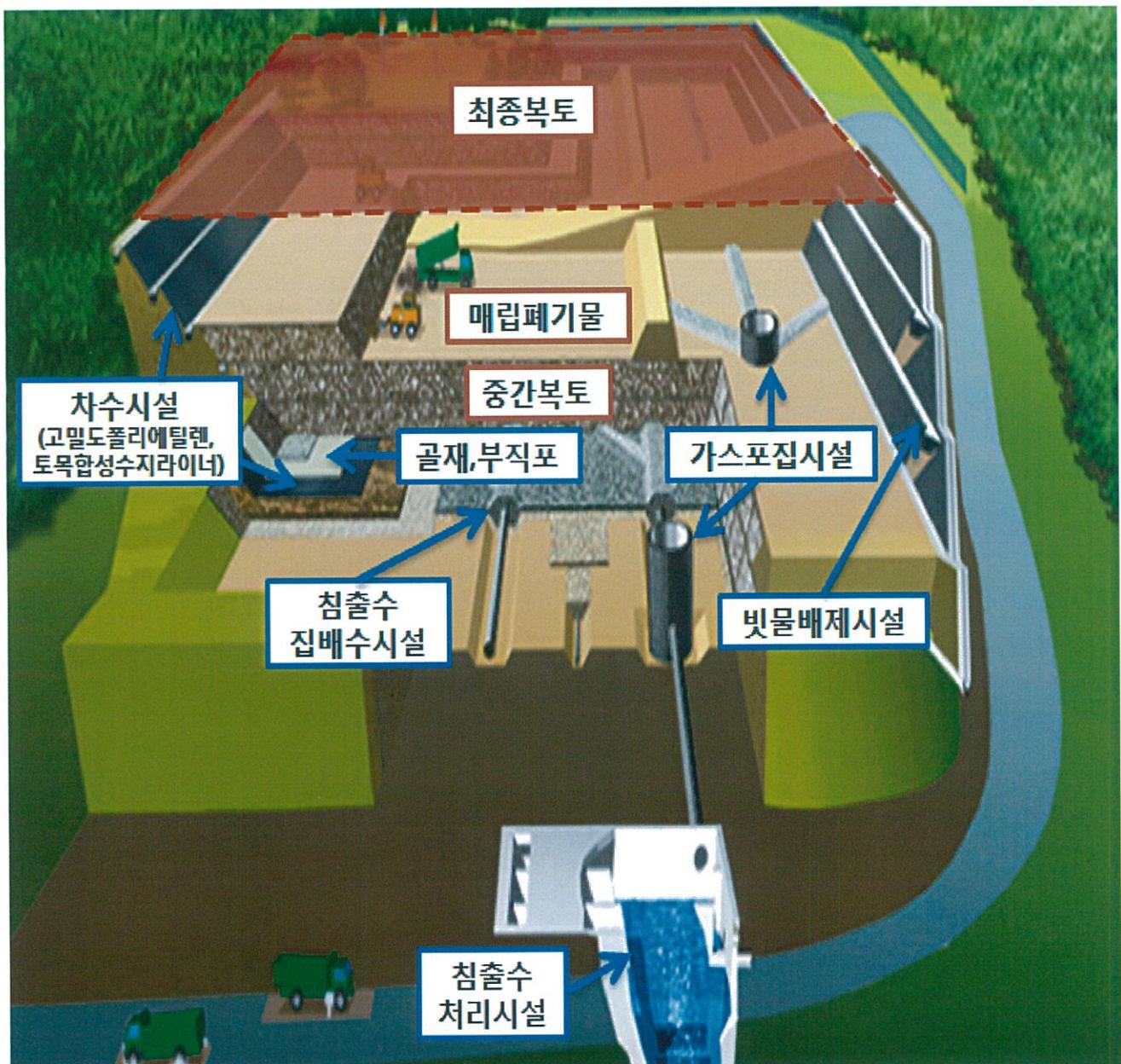
---

- 폐기물매립시설은 폐기물 매립처리라는 고유의 목적을 갖고 축대벽, 차수시설, 침출수 집배수층, 빗물·지하수 배제시설 등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 준수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 또한 매립된 폐기물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자체 및 환경부로부터 매립 종료 후 30년 이상의 사후관리기간을 통해 시설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 이에 폐기물매립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물’에 부합합니다.

■ 폐기물매립시설 구조도



## ■ 폐기물매립시설의 ‘시설물’ 정의 법률 근거

### 가. 「폐기물관리법」

#### 제2조(정의)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 (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별표3(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2.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 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별표1(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 ① 태양광 설비

##### (2) 기존 시설물

- 건축물 이외의 “기존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해당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전거 이용시설을 제외한다)·철도·항만·공항·주차장(지목이 주차장인 경우에 한한다),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아래의 (2-1) 부설주차장 및 (2-2) 자전거 이용시설은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2. 폐기물매립시설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발전은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입니다.

---

- 전국에 사용종료되어 사후관리중인 민간 폐기물매립시설은 총 55개소(1,028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곳은 1개소(23천㎡)로 약 2%에 불과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자료(2013년 기준)

- 사용종료된 매립시설은 매립된 폐기물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최소 30년 이상 지자체 및 환경청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가 철저하며, 동 매립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3. 폐기물매립시설과 유사한 정수처리시설 정수지 또한 부지가 아닌 시설물 기준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

- 정수처리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정수지의 경우, 상부를 토사로 복토하여 외관상으로는 부지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에너지 REC 가중치는 시설물 기준(1.0~1.5)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폐기물매립시설(부지 기준)과 정수지(시설물 기준)의 경우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가중치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에 따라 객관성있는 법리적용을 위해서도 폐기물매립시설 또한 ‘시설물 기준’ 적용이 타당합니다.

---

## 4. 폐기물매립시설의 태양광에너지 REC 가중치 기준을 일반부지가 아닌 시설물 기준으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은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시설물로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더욱이 사용종료 후 30년간 안정화를 위해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무엇보다 국가정책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기반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종료 후 30년 이상의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성 있는 수익사업이 필요하며, 가장 유용한 시설 활용방법은 태양광발전이 거의 유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이에 전국 폐기물매립시설들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태양광에너지 REC 가중치 기준을 부지가 아닌 시설물 기준으로 적용하여 주시기를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첨부 : 폐기물매립시설을 “시설물”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전국 폐기물매립 및 태양광발전업계 연명부 1부.

## 폐기물매립시설을 “시설물” 로 인정해주시기를 바라는 전국 폐기물매립 및 태양광발전업계 연명부

NO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1				
2				
3				
4				
5				
6				
7				
8				
9				
10				